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요령안

2010. 10.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재승인 계획 -----

1. 재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재승인 신청서 접수
3. 재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4. 추진일정
5. 유의사항
6. 기타

II. 재승인 심사 -----

1. 기본방침
2. 심사절차
3.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

III.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 부수
2. 작성 및 제출요령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2. 서약서
3.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

첨부 -----

1. <양식1>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2. <양식2> 서약서
3. <자료1>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처리절차

I . 재승인 계획

I. 재승인 계획

1. 재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중)을 행하는 10개 사업자

2. 재승인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10.18까지(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나. 제출서류(세부내역 'Ⅲ.' 참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사본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2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2부.

다.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 우)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 02-750-2474

3. 재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가. 재승인 조건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시 재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재승인 심사결과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나. 승인장 교부

- 재승인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승인 대상 사업자에게는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거부대상 사업자에게는 재승인 거부사유 등 그 결과를 통보함.

4. 추진일정

- 처리기한 : 접수후 60일 이내(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유 발생시 1회 연장 가능)

5. 유의사항

가. 재승인 신청서 접수기간을 엄수할 것.

- 기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그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 귀속됨.

- 나.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 허위 및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은 방송법 제18조에 의거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함.

6. 기타

- 가.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나.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다. 재승인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재승인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라.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로 문의 바람.
(전화 ; 02-750-2474 / 팩스 ; 02-750-2489 / E-mail ; nhchoi@kcc.go.kr)

Ⅱ. 재승인 심사

II. 재승인 심사

1. 기본방침

- 가. 승인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승인조건 이행여부, 향후 사업계획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여부를 판단
- 나. 재승인 심사대상이 (1) 일반 TV방송과 달리 시청자의 적극적 선택을 필요로 하고, (2) 시장규모가 작고 유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간이한 형태와 방식으로 심사

2. 재승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기준

- 사무조직에서 심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되, 연장자를 심사위원장으로 함

심사 위원	위촉 기준	결격사유
방송분야(1인)	신문·방송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사업자 또는 주요 주주의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청사업자 또는 주요 주주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사업자 또는 주요 주주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회계분야(1인)	공인회계사	
경영·유통분야(1인)	경영·유통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시청자·소비자단체(1인)	시청자·소비자단체 활동가 중 5년 이상 방송관련 종사자	
사무조직(1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담당자	

나. 심사위원회의 운영

- 심사항목별로 적격 여부를 판단(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 등

다. 심사방법

- 심사항목별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부적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부적격으로 평가하고,
 -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을 부과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항목〉

심사항목	방송법 관련 조항
1.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제10조제1항제1호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제10조제1항제2호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타당성 및 기여도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3항제4호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제10조제1항제4호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10조제1항제5호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제10조제1항제6호 제17조제3항제5호
7.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제17조제3항제2호
8.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제17조제3항제6호

3. 추진계획 및 일정

일정	추진계획	비고
'1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심사계획(안) 확정 ○ 재승인 신청 공지 ○ 재승인 신청서 접수(10.13~10.18)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마련 ○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10.11월 ~ '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의견조회(필요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의결 	- 위원회 의결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II.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Ⅲ. 재승인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 부수

- 가. 재승인신청서류는 공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승인장 사본, 서약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목차, 요약문 포함), 첨부서류 순으로 작성함.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함.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가급적 분량을 최소화함.
- 나. 상기 재승인 신청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2부와 해당내용이 들어있는 CD 1개를 제출함.(감사보고서 등의 부속서류는 1부만 제출)

2. 작성 및 제출요령

- 가.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나. 재승인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기술·회계 등 특정 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라.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기타 적의 산정하여 적용한 때에는 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물가 : 재승인 신청 1개월전 불변가액
 - 환율 : 재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대출확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 적용
 - 제세공과금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적용
- 마.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반드시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하여야 함.
- 바.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

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사.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 법인명 또는 성명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할 것.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주요업종 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 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 4) 주소는 본점외에 지점, 공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함.
- 5) 구성주주간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표시
- 6)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마. 주요주주 변동내역(승인일 ~ 2010. 8.)

순번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 해당사항 : 주요주주 변동 및 주요주주 간 지분 순위 변경
- 작성요령 : 변동사항 발생시 소유지분율 5% 이상의 주요주주 현황 모두 기재
- ▷ 첨부 : 변경일자별 주주명부(일반양식 - 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제2장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승인일 ~ 2010. 8.)

가. 역무제공내용 부문

(1) 프로그램 송출실적

변경 일자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송출SO수 /전체SO수	위성방송 (채널번호)	송출SO수 /전체SO수	위성방송 (채널번호)	송출SO수 /전체SO수	위성방송 (채널번호)	
	/		/		/		
	/		/		/		

- 송출SO수 및 전체SO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자를 기록하고 구분·작성
- ▷ 첨부 : 2010년 8월말 현재, 송출 SO현황(지역, SO명(방송구역), 티어링, 채널번호 기재) 1부.

(2) 상품유형별 방송비율(사업계획서 분류에 따라 작성) - 월간/연간

(3) 생산주체별 방송비율 - 월간/연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중소기업				
대기업				
수입상품				

- 대기업 : 방송법제8조제3항, 동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수입 : 제조원과 원산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

▷ 첨부 : 재승인 신청 접수 당시 단계별 방송화면 1부.

나. 운영부문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최근 3년간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재무비율표 작성(재승인 신청 접수 1개월전까지의 자료를 작성)

- 사업수지견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 재무비율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총자산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총자산경상이익율 = (경상이익/총자산)×100

(자산 및 자본의 금액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이며 자본은 당기순이익이 가감된 것임)

▷ 첨부 : 각 연도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각1부

(2) 각종 투자 부문

구 분	2008년(전년대비증감비율)	2009년(전년대비증감비율)	2010년	비고
프로그램 제작비				
방송기술개발 투자비				
직원 교육·훈련비				
계				

(3) 조직·인력 부문

- (가) 부문별 인력구성현황
- (나) 직급별 인력구성현황
- (다) 조직도 - 각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 작성·제출

다. 공공성·공익성 부문

(1) 각종 수상실적(승인일 ~ 2010. 8.)

순번	행사명	수상명칭	수상일	주최(주관)단체	수상내용(취지 및 포상내용 포함)	비고

(2) 공익사업 참여실적(승인일 ~ 2010. 8.)

순번	해당지역	사업(행사) 내용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 내용	지원금액 등	비고

- 지역사회 기부현황, 지역문화행사 주최 또는 후원현황, 기타 비영리사업에 대한 후원 실적 등

(3) 방송발전기금 납부실적(승인일 ~ 2010. 8.)

순번	납부내용(납부사유, 기금징수를 등)	납부일	납부액	비고

- 납부 증명서 첨부

(4)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처분 현황(승인일 ~ 2010. 8.)

순번	구 분	처분일시	처분사유	시정명령의 내용(처분금액 등)	시정결과(납부여부 등)	비고
	'시정명령(or 과태료)'					

- 시정명령 불이행(과태료 등 미납)시, '비고'란에 불이행(미납) 사유 기록

(5) 제반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승인일 ~ 2010. 8.)

순번	처분칭	구 분	처분일시	처분사유	시정명령의 내용(처분금액 등)	시정결과(납부여부 등)	비고
		'시정명령 (or 과징금)'					

- 시정명령 불이행(과태료 등 미납)시, '비고'란에 불이행(미납) 사유 기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6) 심의제재 현황(승인일 ~ 2010. 8.)

순번	구분	처분일시	위반 조항	프로그램명	위반내용	비고
	'사과방송(or 권고)'					

라. 수신자(시청자) 불만처리 부문

- (1)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 각 사별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해당 부서 등), 처리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 (2)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불만 미처리건수	미처리 사유 및 비율(상위 10가지)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제3장 향후 5년간 사업계획

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의 실현 가능성

제1절 사업의 목적

-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신청분야의 개념 및 선정기준, 사업전망 등

제2절 소비자 보호 계획

- 소비자 보호 현황(자율심의시스템 운영현황 등) 및 계획(사전, 사후 처리계획 구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운영 현황 및 계획

※ 첨부서류

- 이용약관 전문 및 이용약관 고지·게시 현황(예시화면 첨부)

제3절 생산자 육성 실적 및 계획

- 사업자간 공정경쟁 확보방안 및 생산사 육성계획

나. 채널 운용 계획

제1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 편성목표 및 기본방향
- 주요 편성내용
- 프로그램 제작·수급 계획
- ※ 첨부서류
 - 주요 예시화면

제2절 상품 구성 및 확보 계획

- 사업 목적에 근거한 상품 구성·확보 계획 및 이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관련서류나 근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제3절 채널 확보 계획

- 매체별 송출 현황 및 채널 확보 계획
- ※ 첨부서류
 - 송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경영 계획

제1절 조직 및 인력 계획

- 인력 및 조직운영 기본원칙
 - 조직도, 조직 및 인력운영(정규/비정규로 구분하여 기술)방안, 업무분장
- 인력현황 및 향후 5년간 인력확보 계획
 -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인력소요 산출 근거 명시)하고,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인력확보 계획(경력, 신입으로 구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 필요인력의 양성실적 및 계획과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교육종류 및 방법 포함)

을 기술함.

제2절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 자금조달·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 계획을 제시함.
- 향후 5년간 소요자금
 - 유·무형자산투자비, 영업비용, 기타소요자금 등으로 구분, 연도별 작성
- 향후 5년간 자금조달 계획
 - 영업활동, 재무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 연도별 작성
-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첨부)

제3절 마케팅 계획

- 승인 이후 마케팅 활동 현황 및 향후 5년간 마케팅 계획

라. 기술 계획

제1절 시설의 설치·운용 계획

- 승인 이후 방송시설 구축·투자 현황 및 방송장비 등 투자계획
- 데이터방송용 서버 및 관련 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콘텐츠 저작 및 검증시스템
 - 콘텐츠 저장/관리/송출 시스템
 - 리턴채널 관리시스템
 - 데이터방송용 서버 및 기타 저장장치 보호시스템(방화벽 등)
 -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 관련 시설계획
 - 데이터방송 사용자 정보 보호시스템
- 시설운영·유지보수 현황 및 계획

마.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계획

제1절 방송산업 육성 지원 계획

- 승인 이후 방송산업 육성 실적
- 방송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기술하되, 관련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함.

제2절 데이터방송 발전을 위한 기여계획

- 승인 이후 데이터방송 발전 기여 실적
- 데이터방송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기술하되, 관련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함.

- 첨부 : 1. <양식 1>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2. <양식 2> 서약서
3. <자료 1>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처리절차. 끝.

첨 부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사항에 관하여 재확인,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승인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승인신청서류에 기술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유효기간인 향후 3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재승인 신청 법인명 : ○ ○ ○ (인)

대표자명 : ○ ○ ○ (인)

<자료 1>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처리절차

■ 방송법 관련 조항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放送의 公的 責任·公正성·公益性的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③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7條(再許可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해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放送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
2. 放送委員會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許可 추천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재승인 처리절차

